

의안 번호	2522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【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</p> <h1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심사보고서</h1>
----------	------	--

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5. 12. 4.(목), 정재환 의원 외 6명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5. 12. 4.(목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5. 12. 16.(화)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- 외국인 자녀들의 보육료 지원 근거 마련을 통해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의 일원으로 원활히 정착할 수 있도록 도모
- 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를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운영의 효율성 제고
- 그 밖에 현 조례의 미비점 보완

나. 주요내용

- 목적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1조)
- 외국인 정의에 관한 사항 변경(안 제2조제2호, 제2조제3호)
- 지원의 범위에 관한 사항 신설(안 제6조제4호)
 - 「영유아보육법」 제2조제3호에 따른 어린이집 재원 아동의 보육교육비
- 자문위원회의 임기 및 회의에 관한 사항 삭제·변경(안 제10조, 제12조)
- 그 밖에 용어 및 오타 등 미비점 정비(안 제3조제1항, 제7조, 제15조제3항)

다. 근거법규

-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- 「영유아보육법」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김순정)

- 현재 정부에서는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~5세 및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만0~5세 한국 국적의 유아를 대상으로 학비 또는 보육료를 지원하여 무상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,
- 울산광역시 교육청은 '22년 9월부터 '울산광역시교육청 다문화교육 지원 조례' 를 개정하여 유치원에 재원 중인 만3~5세 외국 국적의 유아에게도 한국 국적 유아와 동일하게 유아학비를 지원하고 있음.
- 그러나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의 유아에 대하여는 보육료 지원 근거가 없어 미지원되고 있는 실정임.
- 이에 본 조례안은 보육료가 미지원되는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외국 국적의 유아에 대하여 보육료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으로 우리 구의 모든 유아들에게 차별없이 균등한 교육기회를 제공하여 보편적 교육복지를 실현하고자 함
- 또한 조례 제7조의 '울산광역시 중구 외국인주민지원자문위원회' 는 조례상 임의 위원회로 정부의 위원회 정비방향에 맞추어 비상설위원회로 전환하여 안전이 있을시 위촉 운영하여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
- 상위법인 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 제3조에 '지방자치단체는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해야 한다' 고 되어 있고, 「영유아보육법」 제3조에는 '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,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' 고 규정되어 있으므로
- 제반 규정을 검토한바,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조례 개정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

4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근거법규

「재한외국인 처우 기본법」

제1조(목적) 이 법은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재한외국인이 대한민국 사회에 적응하여 개인의 능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하고, 대한민국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사회 환경을 만들어 대한민국의 발전과 사회통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재한외국인”이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로서 대한민국에 거주할 목적을 가지고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2. “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”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재한외국인을 그 법적 지위에 따라 적정하게 대우하는 것을 말한다.
3. “결혼이민자”란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한 적이 있거나 혼인관계에 있는 재한외국인을 말한다.

제3조(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재한외국인에 대한 처우 등에 관한 정책의 수립·시행에 노력하여야 한다.

「영유아보육법」

제3조(보육 이념) ① 보육은 영유아의 이익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공되어야 한다.

② 보육은 영유아가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.

③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, 연령, 종교, 사회적 신분, 재산, 장애,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.

제4조(책임) ① 모든 국민은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진다.

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, 이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③ ~ ⑤ (생략)